

부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631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6310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단33508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범준

피고, 항소인 A

변론 종결 2022. 5. 25.

판결 선고 2022. 7. 13.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단33508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8. 4. 1.에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8. 6. 25. 접수 제164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B의 다른 채권자와의 안분배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권자취소권은 어느 일방의 채권자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채무자인 B의 1/4 지분을 원상회복한 후 이를 강제집행하여 원고와 부산지방법원 2021나63471 사해행위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다투고 있는 B의 다른 채권자에게 안분배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정된 개별주택가격,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에 대해 심리된 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신분관계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과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항) 그 밖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참조). 피고가 기판력을 주장하는 관련사건의 당사자는 이 사건의 당사자와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전소의 주문이 아닌 전소에서 심리된 내용에 대한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해야 하는데,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이 2018. 1. 1. 기준 93,900,000원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이와 달리 인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행위 소송에서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피고가 주장하는 2018.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아니라 그보다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19. 10. 7.경 기준 원고가 감정한 가액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우종

판사강태규

판사주문식

별지